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91

발의연월일: 2020. 8. 14.

발 의 자:이종성·정운천·임이자

김예지 • 이종배 • 김미애

서정숙 · 정경희 · 박성중

이 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나,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예외적인 투표방법을 기립표결로만 규정하고 있어 장애를 가진 의원이나 몸이 불편해 사실상 기립이 어려운 자가 배려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1항단서).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1항 단서 중 "기립표결로"를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2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	제112조(표결방법) ①
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	
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	
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u>기립표</u>	기립표결
<u>결로</u>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는 거수표결로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